

◆……보사부가 지난 3월 13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병·의원에 종사하고 있는 무자격자 단속에 나선 처사에 대해 서울시 의사회 의무이사로 있는 崔明三씨는 간호원에 대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所論을 보건신보 6월 26일후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본회에서는 분개한 나머지 합법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 반박문을 보건신보 7월 6일자에 발표, 그의 부당한 論理를 시정한 바 있다.

여기 崔明三씨의 「무자격간호원 정비문제」라는 제목의 기사와 본회 尹守福총무의 그 반박문을 그대로 轉載, 독자들의 올바른 자세와 인식을 촉구하는 바이다. …◆

무자격 간호원 정비문제

崔 明 三

의료보조원이라 함은 간호원을 비롯하여 「렌트게」 기사, 병리사 또는 흔히 말하는 조수등을 통틀어 부르는 명칭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특히 비중이 큰 간호원 문제에 대하여 말해 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 간호원을 사적으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을 제외한 일반 개인의원에서 말하는 간호원이라함은 의원자체내에서 자기 의원의 생리에 맞도록 양성하면서 간호원으로서 채용하고 있는 이른바 무자격 간호원을 말한다.

그러므로 오랜동안 해당의사의 의료교육과 훈

련을 통한 단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의사의 수족으로서 매우 효율적인 구실을 하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개업의 표시는 비록 소규모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자기에게 적응되게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간호원이라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따라서 개인의원에서는 자격 간호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무자격간호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즉 의사 한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무시간제 의료사업인 만큼 자격간호원을 채용하면 일반적인 통념으로서 시간제를 바라기 때문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인건비가 많은 것이 그 결절일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업자들이 판 선진국에 비하여 비록 그 보수는 많지 않더라도 생활을 위하여 경쟁이 심한 현실에서 불행 인건비의

지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의 하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간호원이 하나의 사회문제로서 대두된 것을 국가의 행정에도 관계된 것으로서 간호원의 절대 인원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만 4천 6백 14명의 간호원이 있으며 모든 종합병원의 수급에는 1백 80명이라는 숫자가 부족한 형편이다. 우리나라만 간호원 수는 의사의 수와 비례한 숫자인 1만 4천 6백 14명으로서 대부분이 종합병원, 보건소, 각 국민학교, 각 관청등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일부분은 해외에 파견되어 있다. 개인병원에도 다소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또 혼인을 하여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즉 간호원수는 1971년 5월말 현재 1만 4천 6백 14명인데 신고자는 5천 6백 85명으로서 전체의 38.9%밖에 안된다. 국가의 보건사업에 크게 이바지하기 위하여 양성된 간호원의 사회적인 봉사활동이 이렇게 부진하다는 것은 여기서 지양해야 할 일이라 본다.

외국의 간호부의 상황을 살펴보면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간호원이 무려 48만 2천 9백 65명으로서 의사 1명에 간호원이 4명꼴이다. 그러면서도 부족하여 우리나라 간호원을 초청하는 형편이다.

한편 우리나라 간호원이 외국에 파견되도록 된 까닭은 보다 나은 대우 문제일 것이다. 어쨌든 우리나라 간호원은 비단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미 독일에 파견된 우리나라 간호원들이 호평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보면 그들의 간호원 절대다수가 부족한 까닭이라 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개업의의 수가 4천 6백 8명인데 자격간호원 5천 6백 85명을 각 개인병원에서 채용한다면 종합병원, 보건소, 각 국민학교, 각 관

청에는 충원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해외에도 파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래서 간호보조원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수 없다. 이 간호보조원은 주로 외국에 파견되기를 바라는 여성들인데 취직은 극히 소수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간호원의 실정은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두가 생활 개척을 위한 방편으로서 회의 속에서 직업을 택하고 있다.

독일의 예를 들어보자.

어느 요양 병원에서는 독일 간호원은 불과 2~3명일뿐 그외에는 대다수가 우리나라 간호보조원이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세계적으로 간호원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실증하고 있다. 더구나 독일에서는 독일간호원의 수보다도 우리나라 간호원이 더 많이 활약하며 투약에서 근육주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독일에서도 국가적으로 간호보조원이 더구나 자기나라 사람도 아닌 한국에서 숙성교육을 받은 간호보조원을 쓰는 것을 볼 때 최근 대두되고 있는 무자격 간호원에 대한 취직에 대하여 새로운 고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독일에서는 자기나라 법률에 한국간호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조문이 없는데도 채용할뿐 아니라 전국민이 우리나라 간호보조원을 대환영하여 앞으로 더 많은 간호원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현재 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간호원 시책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개혁이나 어떤 새로운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성급하게 하지 말고 앞에서 예를 든 독일의 경우와 같이 세계적인 파도현상이니 우리나라도 현실을 냉철히 파악하고 여기에 어울리는 대책을 세워야 하리라고 본다.

필자의 의견을 간추려 보면 현재의 무자격 간

호원이란 적어도 우리나라 실정에 불가피한 여건에 탄생했으며 또한 그런 의로의 계승되어 간만큼 여기에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간호원제도의 모순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현재의 무자격 간호원을 정리하는 근시안적이며 평면적인 대책만을 세워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간호원에 대한 양성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리라고 본다.

예컨대 「매스컴」을 통하여 어떤 무자격 간호원의 의료행위로 팔미압아 불행히도 생명을 잃는 일이 있다고 하여서 설불리 무자격 간호원의 전체의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냉철한 평가가 되지 못한다.

간호원이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설령 법적인 간호원 자격을 얻지 못하더라도 공과에 있어서 단연 의료사업에 도움을 주었다고 단언하고 싶다.

필자도 물론 털어놓고 무자격 간호원을 방치해 두자는 것은 아니다. 법률로서 다스리며 좀더 신중성 있고 합리적인 방법을 취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개인병원의 무자격 간호원에게 국가시험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즉 개업의원 원장의 추천으로 가령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원에게 소정의 연한 교육을 받게하여 개인병원에서 종사하면서 자격을 가지는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위해선 나라의 기본계획이 백년 계획이 되듯이 간호원 정책도 그런 원대한 계획아래 연차적으로 간호원을 양성함과 아울러 개인병원에서 종사하는 무자격 간호원에게도 학술적인 연구를 위한 간호교육 실시와 아울러 커다란 사회문제로서의 무자격 간호원에 대한 시책을 베풀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며 벌써 몇해전부터 전의해 오고 있는 것이다.

바라건대 이런 시책을 담당해야할 보사부 당국은 일부의 의견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이 특수하다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의 박애정신을 본받고 간호의 선봉자 「나이팅게일」을 본받아야 하듯이 이 적은 대가에도 무릅쓰고 일하고 있는 무자격 간호원에게도 응분의 대접이 있어야 하리라고 믿는다.

〈서울시 의사회 의무이사〉

× × ×

崔明三씨의 所論을 駁함

尹 守 福

보건사회부에서 3월 13일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무자격자 단속을 발표한 후 개업가에서는 간호원 분제를 가지고 각 전문지에 많은 기사를 게재해 왔고 그중에는 가소로운 기사도 많이 게재되었으며 이 무자격자 단속을 막기 위

해 의협에서는 간호협회를 끌어 넣는 기사까지도 발표한 일이 있었다.

우리의 신경이 날카로와 있는 이때 6월 26일자 보건신보 7「페이지」에 게재된 崔氏의 기사를 읽고 너무도 불상식한 표현에 참을수가 없어 몇 마디 하고자 한다.

그 기사의 서두에 “의료보조원이라 함은 간호원을 비롯하여 「렌트젠」 기사 병리사 또는 흔히

말하는 조수따위를 통틀어 부르는 명칭이다.”라고 했다.

이런 틀상식한 표현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고 보건 진보사에 알아 보았더니 서울시 의사회 의무이사라고 한다. 그냥 개업의가 아니고 적어도 단체를 대표하는 서울시 의사회의 의무이사직을 맡고있는 분이 의료법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서 신문에 공개한 것은 처음 읽을때는 우습기만 하더니 몇번 읽어 보니까 그 저의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현행 의료법 제1조(목적)에 「본법은 국민보건의 향상과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2조 (의료업자의 중별)에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업자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을 둔다」라고 돼있는 것처럼 엄연히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변법을 합법화시키고자 의료법을 무시하고 왜곡되게 정의를 내린 것은 최고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

의학이 최고도로 발달하였고 보건의료 사업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며 완전히 「팀웍」이 되어있어 상호 도와야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의 기사를 빌리면 의사 외에는 모두 의료보조원으로 간주하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이 역력히 보여진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사의 수족같이 쓰고 싶어하고 소규모의 시설을 빙자하여 근로기준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어린 소녀들을 24시간 혹사시키면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비싸고 시간제를 요구하는 간호원을 쓸 수 없다고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무자격간호원 자격간호원 운운하는 그런 어귀를 그도 역시 사용하는데 의사를 부를때에

도 무자격의사 자격의사라고 부르는지 묻고 싶다. 나는 아직 그렇게 부르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하였고 어느 기사에서도 본 일이 없다.

자기들의 직업을 존중할 줄 안다면 남의 직업도 존중할 줄 아는 「에티켓」이 지성인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간호원이면 간호원이지 자격간호원은 무엇이며 면허가 없으면 무자격자이지 무자격 간호원은 무엇인가.

다시는 이렇게 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황모씨의 말대로 하여 인건비가 많고 24시간 부릴 수가 없어서 간호원을 쓸 수 없다고, 그대로 의사의 수족같이 쓸 수 있는 보조원을 쓰고 간호원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의료법 제16조(간호원의 면허)에 간호원 자격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고 「간호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보건사회부 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간호원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교를 졸업하거나 외국의 간호원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본법에 의한 간호원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또 25조(무면허자의 의료 사무금지)에는 「의사가 아니면 의료를 조산원이 아니면 조산업무를 치과의사가 아니면 치과외료를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외료를 간호원이 아니면 간호업무를 행하지 못하며 또한 자각 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제정되어 있어 간호원 아닌자가 간호행위를 할 수 없고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이 법을 전연 무시한 언사를 정당한 것처럼 논술한 것은 법에 대한 그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며 그의 법에 대한 정신을 의심하고 싶다. 보건

사회부가 현행법을 적용 무자격자를 단속하려는 데 국민보건을 위해 의료업자로서 협조는 하지 못할망정 자기들의 의견만을 생각하고 반발하고 있는 자세는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업자는 물론 보조원일지라도 교육기관 기간 과목등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이 법을 무시하고 아무 훈련도 받지않은 소녀들을 싼 임금으로 채용하고 그들에게 간호원이란 명칭을 도용하여 의료법 제25조를 범하고 있음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나아가 타전 문적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죄스럽게 생각 하여야 할데인데 이를 정당화하는 글을 공개한 것은 의 사회의 의무이사라는 점에서 더욱 한심한 일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영세외가 되어서 면허소지자를 채용하기 어렵다면 솔직히 보조원이라는 이름하에 그들을 고용하고 국민앞에 몇 몇하게 보조원의 일만 시키면 누가 단속을 할 것이며 가타 부타 할 것인가.

인간의 생명은 존엄할때 무자격자에게 주사 행위까지 시키면서 추후도 미안한 표정은 없고 생명을 잃었을 때 들추어 낸다고 오히려 「매스 콕」을 원망한 기사는 그 양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사회가 어수룩하고 여성들이 무지하여 자기들의 권리를 찾을줄을 몰라서 이런 기만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행세해 왔고 이런 일이 계속되어도 항의하는 사람하나 없었던 것이다.

또 그는 자기의 주장을 합법화 하기위해 간호원의 절대수 부족을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부족한 것이 하필 간호원 뿐인가.

어느 부분에 부족하지 않은데가 없는데 그중에서도 의료요원은 다 부족한 형편이다. 전국

1백92개 보건소 소장이 50여개소나 공석이라고 걱정한다. 다시 말해서 보건소중 38.4%가 보건소장이 없다는 말이다. 보건소장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을 책정지급 하는데도 잘 사람이 없어 공석중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아닌 사람도 잘 수 있는 법을 논할때마다 의계에서는 한사코 반대하여 계속 공석상태로 있는 형편이면서 간호원 부족만 들추어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을 합법화 시키려는 심산이 가증스럽기만 하다. 최모씨 논법에 의하면 면허 소지자가 남아 돌아간다고 해도 쓸 용의가 없는 것은 뻔한 일이다.

(※개인의원을 제외한 모든 보건 의료기관에는 간호원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

간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근 간호교육기관이 많이 증설되었고 (현재 49개소) 기존 시설에도 정원이 증원되어 매년 배출수가 증가되어 금년에는 2천5백여명이 배출되었고 73년도에는 2천9백명 74년도에 3천2백명 75년도에 3천5백명으므로 매년 3천여명의 신졸입생이 배출된다. 금년도 신졸입생중 3월말 조사에 의하면 50%가 취업이 되었다. 다시 6개월에 조사한 결과는 약 70%가 취업이 되고있어 약 30%는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이다.

부족하다는 개념을 나는 의심한다.

부족하다는 뜻은 서독의 경우와 같이 간호원이 부족하여 병원을 지어놓고 기원할 수가 없어서 멀리 다른 나라에서 까지 데려와야 하는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이지 우리나라 같이 일련히 간호원의 TO에 무자격자를 쓰고 있고 시·도립병원의 경우 간호원의 TO도 제대로 책정하지 않고 있으면서 입버릇처럼 간호원 부족만 내세우고 있다.

또한 최모씨가 내세운 또 한가지 기사내용 인 즉 무자격자에게 국가시험을 치게하여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의료요원의 교육을 위해서 법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이때에 법령을 주장함은 시대적으로 너무도 뒤떨어진 사고 방식이다. 면허제도를 존중하고 자기들의 수속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공포가 크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길지도 않은 9개월 동안) 불심양면으로 도와서 공포가 큰 그들에게 報恩하고 면허제도의 존귀함을 몸소 실천하도록 하는 아량은 배필지 못하고 그들을 24시간 혹사하면서 그들을 간단히 구제하고자 하는論議는 인간의 건강을 책임진 의사로서는 너무나 지나친 위법 행위이며 자기욕심만 채우자는 집산이다. 의사가 부족하다고 의료기관에 5~6년 종사한 보조원 그룹에게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케해서 의사를 만들자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현실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이단자 취급을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조처는 부당하다고 10년전인 1962년도부터 완전히 폐지된 법인데 과거로 후퇴하는 이런 사고 방식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수년전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보일때 시설 및 교수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의협에서 강경하게 반대하고나서 문교부가 보류한 사실을 회고해 볼때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요원의 교육이 의사의 교육만 중요시 되고 다른 분야는 경시되어드 된다는 말인가. 다각기 자기 분야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노력하여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전문직업인의 자세며 전문단체가 해야할 과업이 아니겠는가. 간호원의 수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서드 도와서 자기 타 전문직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국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길이 우리들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다시 부언해서 제언하고 싶은 것은 같은 의료업자의 입장에서 다시는 그 명칭에 대한 부당하고도 불법적인 발언이나 그 업무 영역을 침해하는 언사나 행위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란다.

<대한간호협회 총무>

공

고

최근 서울과 부산에서 구급환자 진료거부로 수많은 의사가 구속되는 등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보건사회부에서는 전국의 의료인에게 행정명령을 내리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대한 의학회에서는 몇몇 의사의 잘못 때문에 전 의료인에게 내려지는 이 불미한 사태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해 평평이 맞서고 있다. 우리간호협회도 의료인으로서 이 사태를 방관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보사부에서 告示한 國民醫藥管理에 관한 命書를 여기 공시하는 바이다.

保健社會部長官

第1條 (目的) 各級醫療機關에서는 國民醫療奉仕에 앞서 收入增大만을 念願하여 各種 不美스러운 行態가 發生하고 있으며 이 行態가 持續될 境遇 國民保健醫療에 重大한 危害를 招來할 憂慮가 있어 이를 未然에 防止하여 國民의 健康한 生活를 保障하기 위하여 國民醫療管理의 適正을 期할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救急患者의 應急措置) 各級醫療機關은 救急을 要하는 患者에 대하여는 診療時間 또는 患者의 經濟能力 其他 如何한 理由에도 不拘하고 人命救護에 必要한 應急措置를 適時에 實施하여야 한다.

第3條 (醫療廣告의 禁止) 醫療機關을 開設한 醫療人이 醫療關係 研究所 또는 研究會 等을 開設하고 그 名義로 醫療에 關하여 虛偽 또는 誇大하게 誌報, 新聞, 雜誌 등 刊行物을 通한 常習의 廣告를 하거나 診療案內書 診療者書 等을 發刊 配布하여 醫療宣傳을 行함으로써 國民을 眩惑시키는 一切의 醫療廣告를 禁한다.

第4條 (虛偽診斷書 등의 發給禁止) 醫療人이 醫療法에 保障된 醫療人의 業務範圍를 逸脫하여 診斷書, 檢案書, 檢屍證明書, 出生證明書, 死亡診斷書 等을 無診察 또는 虛偽 誇大하게 發行하여 社會秩序를 紊亂케 하는 一切의 行爲를 禁한다.

第5條 (行政措置) 以上の 命書를 違反할 때에는 醫療法 第19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當該 醫療人에게 3月以上 2年以下의 業務停止處分을 한다.

附 則

이 告示는 告示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참고조항>

의료법 第19條 第2項

保健社會部長官은 醫師, 齒科醫師, 漢醫師, 助産員 또는 看護員이 基로 그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하였거나 정당한 事由없이 第45條4項의 規定에 의한 申訴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第22條 第1項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業務停止시킬 수 있다.